

# 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282,680,555	38,480,417
일반회계	1,139,146,845	34,174,405
특별회계	143,533,710	4,306,011
공기업특별회계	130,040,232	3,901,207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9,498,553	884,95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00,541,679	3,016,250
기타특별회계	13,493,478	404,80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381,205	71,436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1,555,000	46,650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6,938,100	208,143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2,176,091	65,283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02,457	3,074
지하수특별회계	340,625	10,21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,705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4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